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 663호
개정	2006. 1. 11	조례 제 791호
	2006. 4. 12	조례 제 799호
	2006. 10. 13	조례 제 831호
	2006. 12. 29	조례 제 856호
전문개정	2007. 7. 1	조례 제 884호
개정	2007. 12. 17	조례 제 910호
전문개정	2008. 12. 29	조례 제 966호(제명개정)
개정	2009. 6. 26	조례 제1039호
	2009. 12. 29	조례 제1059호
	2010. 2. 23	조례 제1070호
	2010. 8. 2	조례 제1091호
	2010. 12. 17	조례 제1117호
일부개정	2011. 7. 8	조례 제1155호
일부개정	2011. 12. 15	조례 제1192호
일부개정	2012. 3. 2	조례 제1216호
일부개정	2012. 9. 6	조례 제1243호
일부개정	2013. 3. 6	조례 제1273호
일부개정	2013. 11. 1	조례 제1329호
일부개정	2014. 10. 6	조례 제1386호
일부개정	2015. 5. 18	조례 제1453호
일부개정	2016. 5. 27	조례 제1577호
일부개정	2016. 12. 12	조례 제1621호(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53호
전부개정	2017. 10. 2	조례 제1713호
일부개정	2017. 12. 11	조례 제1736호(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 5. 14	조례 제1799호
일부개정	2018. 10. 16	조례 제1870호
일부개정	2019. 7. 1	조례 제1928호
일부개정	2019. 10. 10	조례 제1956호(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9. 12. 13	조례 제1978호
일부개정	2020. 12. 14	조례 제2084호
일부개정	2021. 2. 19	조례 제2107호(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 6. 30	조례 제2146호
일부개정	2021. 12. 31	조례 제2229호
일부개정	2022. 5. 17	조례 제2300호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2366호
일부개정	2023. 2. 27	조례 제2378호
일부개정	2023. 12. 8	조례 제2464호
일부개정	2024. 7. 15	조례 제2528호
일부개정	2025. 5. 2	조례 제26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시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3, 2021. 6. 30, 2024. 7. 15>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국장의 직급과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중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 2019. 12. 13>

제3조(소재지) 시 본청,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시 본청

제4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② 제1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6, 2019. 7. 1, 2020. 12. 14, 2022. 5. 17, 2022. 12. 30, 2024. 7. 15, 2025. 5. 2>

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나.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

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에 관한 사무

다. 푸른공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사무

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5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무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국,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을 둔다. <개정 2018. 10. 16, 2019. 7. 1, 2022. 12. 30, 2024. 7. 15, 2025. 5. 2>

제6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시민소통관을 둔다.

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0. 12. 14, 2021. 6. 30, 2022. 12. 30, 2025. 5. 2>

[전문개정 2018. 10. 16]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과, 법무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22. 12. 30, 2025. 5. 2>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30, 2025. 5. 2>

1. 기획, 조직, 정책개발, 인구정책, 의회협력,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2.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분석, 투자심사에 관한 사무

3. 법무행정, 법률지원 및 소송에 관한 사무

4. 행정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8. 10. 16]

[제목개정 2022. 12. 30]

제7조의2(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 직원복지, 국내·외 교류, 공무원관리 및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자치행정, 자치분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무
3. 인사, 공무원교육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무
4. 민원행정, 민원조정,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5. 5. 2]

제8조(재무국에 두는 과) ① 재무국에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1. 6. 30, 2025. 5. 2>

② 재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6. 30, 2025. 5. 2>

1. 지출, 재무회계, 계약에 관한 사무
2. 공유재산관리, 시유재산 찾기, 청사관리, 공용차량에 관한 사무
3. 지방세, 세입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무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8. 10. 16]

[제목개정 2025. 5. 2]

제8조의2(교육청년여성국에 두는 과) ① 교육청년여성국에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청년정책과, 여성가족과를 둔다.

② 교육청년여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책의 추진 및 학교교육 지원, 청소년에 관한 사무
2.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무
3. 청년정책, 청년복지, 청년주거 및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무
4. 여성정책, 출산지원, 건강가정, 다문화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5. 5. 2]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6, 2021. 6. 30, 2022. 12. 30, 2025. 5. 2>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6, 2019. 10. 10, 2021. 6. 30, 2022. 12. 30, 2023. 12. 8, 2025. 5. 2>

1. 문화정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무
2. 체육행정 및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
3. 관광정책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25. 5. 2]

제10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개정 2025. 5. 2>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7. 1, 2021. 6. 30, 2025. 5. 2>

1. 보훈, 돌봄지원, 사회서비스, 생활보장 및 무한돌봄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노인시설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무
3. 장애인복지, 장애인지원 및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무
4. 아동복지, 아동보호, 아동보육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25. 5. 2]

제11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1. 6. 30, 2022. 12. 30, 2024. 7. 15>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7. 1, 2019. 12. 13, 2021. 6. 30, 2022. 12. 30, 2024. 7. 15, 2025. 5. 2>

1. 일자리정책, 일자리창출, 고용, 노사협력에 관한 사무
2. 민생경제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 사회적경제, 소비자유통에 관한 사무
3. 기업지원, 국제통상, 경제협력, 공장설립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4. 7. 15>
5. 삭제 <2024. 7. 15>
6. 삭제 <2024. 7. 15>
7. 삭제 <2024. 7. 15>

[전문개정 2018. 10. 16]

[제목개정 2024. 7. 15]

제11조의2(농림축산국에 두는 과) ① 농림축산국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

림과, 동물보호과를 둔다.

② 농림축산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농업지원, 농식품유통, 먹거리지원, 농지관리 및 농업기반에 관한 사무
2. 축산행정, 축산환경, 가축방역 및 축산물유통에 관한 사무
3. 산림정책, 산지관리, 산림자원 및 산림휴양에 관한 사무
4. 반려동물문화, 동물보호, 동물구조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4. 7. 15]

제12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정책실에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6, 2019. 7. 1, 2024. 7. 15>

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3, 2021. 6. 30,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2025. 5. 2>

1.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에 관한 사무
2. 도시개발기획, 개발행위관리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무
3.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정비에 관한 사무
4.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8. 10. 16]

제13조(주택국에 두는 과) ① 주택국에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택정비과, 건축과, 공공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0. 12. 14, 2021. 6. 30, 2023. 12. 8, 2024. 7. 15>

② 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4, 2023. 12. 8, 2024. 7. 15, 2025. 5. 2>

1. 주택행정, 주택정책, 정비기획, 건축기획에 관한 사무
2. 공동주택, 주택관리, 주택조합 및 주택감사에 관한 사무
3. 주택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무
4.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지도, 건축관리, 건축안전에 관한 사무
5. 공공청사, 공공건축, 건축설비에 관한 사무

제14조(교통정책국에 두는 과) ① 교통정책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물류화물과를 둔다. <개정 2020. 12. 14, 2022. 12. 30, 2024. 7. 15>

② 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4,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2025. 5. 2>

1. 교통행정, 교통평가, 교통시설, 교통정보 및 주차운영·시설에 관한 사무
2. 버스정책, 버스노선, 버스개선, 공공버스 및 택시운수에 관한 사무
3. 철도행정, 철도계획, 경량전철관리에 관한 사무
4. 물류정책, 물류단지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8. 10. 16]

[제목개정 2024. 7. 15]

제14조의2(건설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국에 건설정책과,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생태하천과를 둔다. <개정 2024. 7. 15, 2025. 5. 2>

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8, 2024. 7. 15>

1. 건설행정, 도로재산, 도로계획 및 민자도로에 관한 사무
2. 도로건설, 도로위수탁사업 및 도로정비에 관한 사무
3. 지하안전관리 및 도로구조물, 보행자전거도로에 관한 사무
4. 하천행정, 하천계획, 하천시설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2. 12. 30]

[제목개정 2024. 7. 15]

제14조의3(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 두는 과) ①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 반도체정책과, 반도체국가산단과, 반도체일반산단과를 둔다. <개정 2024. 7. 15>

②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7. 15>

1. 반도체산업정책, 반도체기업투자, 반도체기술지원 및 반도체인재양성에 관한 사무
2. 국가산단지원, 반도체밸리 및 국가산단기반 조성에 관한 사무
3. 반도체산단정책, 반도체산단계획 및 반도체산단기반 조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9. 7. 1]

[종전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2. 12. 30]

[제목개정 2024. 7. 15]

제14조의4(미래도시기획국에 두는 과) ① 미래도시기획국에 미래성장전략과, 미래도시과, 기업산단입지과, 4차산업융합과를 둔다.

② 미래도시기획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5. 2>

1. 미래성장전략기획, 미래모빌리티 및 미래에너지에 관한 사무
2. 미래도시행정, 플랫폼시티, 공공택지에 관한 사무
3. 일반·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스마트혁신도시, 스마트영상정보 및 AI융합도시 등 4차 산업혁명 융합 정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4. 7. 15]

제14조의5(기후환경위생국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위생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5. 5. 2>

② 기후환경위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5. 2>

1. 환경정책, 환경교육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기후정책, 탄소중립, 대기개선 및 생활환경에 관한 사무
3.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시설 설치·운영,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자원에 관한 사무
4. 위생관리,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4. 7. 15]

[제목개정 2025. 5. 2]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5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센터에 두는 과) ① 센터에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를 둔다.

②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무
2.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에 관한 사무
3. 농촌청소년 및 농업후계자 등 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무
4. 지역농업의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
5.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
6. 농·축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에 관한 사무
7. 농작물 병충해 예방·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8.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9.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10. 농촌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무
11.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육성에 관한 사무
12.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
1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관한 사무
14.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15.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16. 비료·농약·토양·수질·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분석
17. 주요 농산물 가공기술 및 산업화 연구
18.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19.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해 필요

한 사무

제18조(상담소의 설치) ①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 기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6. 3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보건소에 두는 과) ① 처인구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를 두고, 기흥구·수지구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3>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22조(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 6. 30>

제23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0,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2025. 5. 2>

1. 도서관사업소에는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서부도서관을 둔다.
2.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를 둔다.
3. 상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를 둔다.
4. 하수도사업소에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하수관로과를 둔다.

[전문개정 2018. 10. 16]

제2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3,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1. 도서관사업소
 - 가. 도서관 정책, 독서진흥에 관한 사무
 - 나. 도서 및 각종 기록물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무
 - 다.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무
 - 라.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협조에 관한 사무
2. 푸른공원사업소
 - 가. 공원·녹지 조성계획 수립·추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관한 사무
 - 나. 동부권역 공원관리에 관한 사무
 - 다. 서부권역 공원관리에 관한 사무
3. 상수도사업소
 - 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 나. 수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
 - 다. 상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
 - 라. 송·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무

- 마. 정수의 생산·공급 및 수질시험에 관한 사무
- 바.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4. 하수도사업소
 - 가. 하수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무
 - 나.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
 - 다. 하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
 - 라. 하수재생 및 물의 재이용 사업에 관한 사무
 - 마. 분뇨·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5. 차량등록사업소
 - 가. 차량등록에 관한 사무
 - 나. 특별사법경찰, 차량체납, 차량세무에 관한 사무
 - 다.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구청장) 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① 처인구에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대민협력관을 둔다. <신설 2022. 12. 30>

②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처인구·기흥구에 한한다), 세무2과(처인구·기흥구에 한한다), 세무과(수지구에 한한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처인구에 한한다), 환경위생

과(처인구에 한한다), 산업환경과(기흥구·수지구에 한한다),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처인구·기흥구에 한한다), 도로과(처인구·기흥구에 한한다), 건설도로과(수 지구에 한한다), 도시건축1과(처인구·기흥구에 한한다), 도시건축2과(처인구·기흥구에 한한다), 도시건축과(수 지구에 한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3, 2021. 6. 30,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2025. 5. 2>

[제목개정 2022. 12. 30]

제2절 읍·면·동

제29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제1항, 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에 따르고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3>

제30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중전 제31조에서 이동 2018. 10. 16]

제31조(직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통·리·반장 조직운영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는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중전 제30조에서 이동 2018. 10. 16]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3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39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10. 16, 2019. 7. 1, 2019. 12. 13, 2020. 12. 14, 2021. 6. 30, 2021. 12. 31, 2022. 5. 17, 2022. 12. 30, 2023. 2. 27, 2023. 12. 8, 2025. 5. 2>

1. 집행기관의 정원: 3,32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3명

제3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3>

제3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삭제 <2024. 7. 15>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균형발전국”을 “도시균형발전실”로 한다.

②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환경관리사업소”를 “환경위생사업소, 동물보호센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도시균형발전국”을 “도시균형발전실”로 한다.

③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의 위원장관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⑨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⑩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제46조, 제47조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⑪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⑫ 「용인시 관·학 대외협력협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⑬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⑮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⑯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⑰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⑮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제1호 중 “도시균형발전국장”을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한다.

⑯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⑰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⑱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⑳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㉑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㉒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㉓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㉔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제52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㉕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㉖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3항제1호, 제6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하고, 제61조제3항제1호, 제68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제3항 중 “도시균형발전국장”을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한다.

㊱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㊲ 「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㊳ 「용인시 문화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㊴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㊵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㊶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㊷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㊸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㊹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④⑩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⑪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④⑫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⑬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⑭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중 “4급 각 실·국장”을 “각 실·국장”으로 한다.

④⑮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④⑯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⑰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⑱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⑲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①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②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③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제4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③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시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④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4항제1호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⑤⑤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제8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⑥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⑦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⑧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국장”을 “실장, 국장, 소장”으로 한다.

⑤⑨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⑩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⑪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⑫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⑥⑬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3, 5의 차장란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⑥4 「용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⑥5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6 「용인시 주택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⑥7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8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9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0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1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2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3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3항제1호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4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⑦⑥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⑦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⑧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⑨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⑧⑩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⑧①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⑧②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

⑧③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소·원장”을 “실·국·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36호,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처인구의 기관명 중 “모현면사무소”를 “모현읍사무소”로 하고 처인구의 모현읍사무소(당초의 모현면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 사	현 부	읍 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	모현읍 일원
--------	--------	--------	----------------------	--------

별표 1의 처인구의 모현읍사무소란(당초의 모현면사무소란) 다음에 이동읍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사	동 부	읍 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	이동읍 일원
--------	--------	--------	----------------------	--------

별표 1의 처인구의 이동면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이동상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동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	이동읍
-----------	----------------------	-----

별표 3의 “모현면 보건지소”를 “모현읍 보건지소”로 하고 모현읍 보건지소란(당초의 모현면 보건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 보	현 건	읍 지	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	모 현 읍 일 원
--------	--------	--------	---	----------------------	-----------

별표 3의 모현읍 보건지소란(당초의 모현면 보건지소란) 다음에 이동읍 보건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보	동 건	읍 지	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	이 동 읍 일 원
--------	--------	--------	---	----------------------	-----------

별표 3의 이동면 보건지소란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처인구의 관할구역란 중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을 “모현읍, 이동읍, 남사면”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18. 5. 14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6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교통관리사업소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투자산업국장”을 각각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

③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균형발전실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하고, “교통관리사업소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공원녹지과”을 “공원조성과”로 하고, 같은 표의 그 밖에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관부서란 중 “시민안전과”를 “시민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⑤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국장”을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투자산업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⑨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혁신실장, 기획재정국장”을 “자치행정실장, 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균형발전실장, 안전건설국장”을 “도시정책실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⑪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⑫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도시균형발전실장, 안전건설국장”을 “재정국장, 도시정책실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0 조례 제1956호,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동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호의 공공청사의 건축물의 종류란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으로 한다.

④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가목(1) 중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목 (2) 중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호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⑩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 중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⑫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20. 12. 14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9 조례 제2107호,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처인구 기관명란 중 “남사면행정복지센터”를 “남사읍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표 중 “남사면”을 각각 “남사읍”으로 한다.

별표 2의 남사상담소란 중 “남사면”을 각각 “남사읍”으로 한다.

별표 3의 “남사면보건지소”를 “남사읍보건지소”로 하고 같은 표 중 “남사면”을 각각 “남사읍”으로 한다.

별표 4의 처인구의 관할구역란 중 “남사면”을 “남사읍”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2021. 6. 30 조례 제2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9조, 제22조,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주택과”를 “주택관리과”로,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한다.

②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방부의 주관부서란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하고, 같은 표 행정안전부의 주관부서란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하며, 같은 표 국토교통부의 주관부서란 중 “건설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란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각각 “시민안전관”으로, “건설도로과”를 각각 “도로관리과”로 한다.

별표 4 가목의 제1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하고, 같은 목 제8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담당관, 건설도로과”를 “시민안전관, 도로관리과”로 하며, 같은 표 나목의 제1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담당관, 건설도로과”를 “시민안전관, 도로관리과”로 한다.

③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각 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를 “치 인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마목 중 “각 구청(사회복지과, 기흥구 사회복지과)”를 “치 인구청(사회복지과), 기흥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사회복지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라목 중 “각 구청(치인구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수 지구 산업환경과)”를 “치인구청(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산업환경과), 수지구청(산업환경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가목 중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아목 중 “각 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치인구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수지구 건축허가과)”를 “치인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로 한다.

④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고장신고란 중 “건설도로과”를 “도로과”로 한다.

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7 조례 제2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투자산업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

②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건설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하고, 같은 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공원조성과”를 “동부(서부)공원관리과”로, “구청 자치행정과·공원(산업)환경과”를 “구청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처인), 산업환경과(기흥,수지)”로 하며, 같은 표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공원(산업)환경과”를 “구청 환경위생과(처인), 산업환경과(기흥,수지)”로 하고, 같은 표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자치행정과·사회복지과”를 “구청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처인,수지), 가정복지과(기흥)”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하천과, 구청 건설도로과”를 “생태하천과, 구청 건설과(처인,기흥), 건설도로과(수지)”로 한다.

③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나목의 제5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건설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하며, 같은 목 제8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담당관, 건설도로과”를 “시민안전관, 도로관리과”로 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 7. 15>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⑤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를 “교육문화체육관광국(교육청소년과)”로 한다.

⑥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외교부의 주관부서란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신성장전략과”로 하고, 같은 표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의 주관부서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기후대기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신성장전략과”로 하고, “도시청결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별표 4 가목 제3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도시청결과”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목 제6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신성장전략과”로 한다.

별표 4 나목 제3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도시청결과”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목 제6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신성장전략과”로 한다.

⑦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하고, “일자리산업국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3. 2. 27 조례 제2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 제24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주택관리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②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동부도서관장 및 서부도서관장”을 “동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및 서부도서관장”으로 한다.

③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소관부서란 중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하며, 같은 표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건축허가과”를 “구청 도시건축과”로 하고, 같은 표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건축허가과”를 “구청 도시건축과”로 하며, 같은 표의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소관부서란 중 “동부도서관”을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으로 한다.

④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아목 중 “처인가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를 “처인가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로 한다.

부칙 <2024. 7. 15 조례 제2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정책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③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신성장전략과”를 “미래성장전략과”로 하고, 같은 표의 환경부의 주관부서란 중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하며, 같은 표의 해양수산부의 주관부서란 중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하고, 같은 표의 행정안전부의 주관부서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란 중 “신성장전략과”를 “미래성장전략과”로 한다.
별표 4의 가목제5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㉞)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하고, 같은 표의 가목제6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㉞)란 중 “신성장전략과”를 “미래성장전략과”로 하며, 같은 표의 나목제6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㉞)란 중 “신성장전략과”를 “미래성장전략과”로 한다.

④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소관부서란 중 “사회복지과(처인,수지), 가정복지과(기흥)”을 “사회복지과(처인), 가정복지과(기흥,수지)”로 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소관부서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한다.

⑤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주택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정책국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정책국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정책국장”으로 한다.

⑨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건설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정책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⑪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⑫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정책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5. 5. 2 조례 제2607호>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유림
동행정복지센터의 개정부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단서(유림동행정복지센터 분동)와 관련한 별표 7의 정원 개정부
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공보관”을 “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

②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도로관리과”를 “도로건설과”로 하며, 같은 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교육문화체육
관광국”을 “교육청년여성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소관부서란 중 “사회복지과(처인), 가정복지과
(기흥,수지)”를 “가정복지과”로 하며, 같은 표의 그 밖에 어린이에게 놀이
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관부서란 중 “시민안전
관”을 “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③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방부의 주관부서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
고, 같은 표의 행정안전부의 주관부서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
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토교통부 주관부서 중 “도로관리과”를 “도로건
설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란 중 “시민안전관”을 각각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4 가목제1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목 제8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표 나목제1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목 제8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한다.

④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3항제1호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여성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실장”을 “국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재정국장”을 “재무국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재정국장”을 “재무국장”으로 한다.

⑨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의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을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으로 하며, 라목의 “재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마목의 “처인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를 “재무국”으로 하며, 바목의 “읍·면·동”을 “처인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하고 바목 다음에 “사.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을 “교육청년여성국”으로 하며, 나목의 “복지여성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다목의 “보건소”를 “사회복지국”으로 하며, 라목의 “도서관사업소”를 “보건소”로 하고, 마목의 “처인구청(사회복지과, 기흥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도서관사업소”로 하며, 마목 다음에 “바. 처인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기흥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마목의 “환경국”을 “기후환경위생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의 가목의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을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으로 한다.

⑪ 용인시조례 제2597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중 “14일”을 “1일”로 한다.

⑫ 용인시조례 제2598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중 “14일”을 “1일”로 한다.

⑬ 용인시조례 제2599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중 “14일”을 “1일”로 한다.

⑭ 용인시조례 제2600호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중 “14일”을 “1일”로 한다.

제3조(분동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25. 5. 2>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제3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용 인 시 청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 인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	
용 인 시 처 인 구 보 건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 인 시 기 흥 구 보 건 소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용 인 시 수 지 구 보 건 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용 인 시 도서관사업소	도 서 관 정 책 과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동 부 도 서 관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중 부 도 서 관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10	
	서 부 도 서 관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 23	
용 인 시 푸른공 원 사 업 소	공 원 조 성 과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	
	동 부 공 원 관 리 과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	
	서 부 공 원 관 리 과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	
용 인 시 상 수 도 사 업 소	수 도 행 정 과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수 도 시 설 과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정 수 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619번길 77	
용 하 사 인 수 도 업 소	하 수 행 정 과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하 수 시 설 과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하 수 운 영 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	
	하 수 관 로 과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용 차 량 등 인 사 업 시 소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용 처 인 구 시 청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용 기 흥 구 시 청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용 수 지 구 시 청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치 인 구	포곡읍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포곡읍 일원
	모현읍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	모현읍 일원
	이동읍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	이동읍 일원
	남사읍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내기로 22	남사읍 일원
	원삼면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	원삼면 일원
	백암면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	백암면 일원
	양지면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 5	양지면 일원
	중동읍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90번길 3-20	김량장동, 남동 일원
	역북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	역북동 일원
	삼가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삼가동 일원
	유림1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15	유방동 일원
	유림2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186-2(고림동)	유방동, 고림동 일원
	동부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일원
기 홍 구	신갈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신갈동 일원
	영덕1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홍덕2로118번길 2	영덕동 일원
	영덕2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68	하갈동, 영덕동 일원
	구갈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23	구갈동 일원
	상갈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2	상갈동 일원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10번길 6-10	보라동, 지곡동 일원
	기흥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43번길 12-14	공세동, 고매동 일원
	농서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79	농서동, 서천동 일원
	구성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77번길 17	연남동, 청덕동 일원
	마북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16	마북동 일원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동 백 1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동백동 일원
	동 백 2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4	중동 일원
	동 백 3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98-2	동백동, 중동 일원
	상 하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3	상하동 일원
	보 정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0	보정동 일원
수 지 구	풍 덕 천 1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	풍덕천동 일원
	풍 덕 천 2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1	풍덕천동 일원
	신 봉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15	신봉동 일원
	죽 전 1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5번길 50	죽전동 일원
	죽 전 2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23	죽전동 일원
	죽 전 3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2	죽전동 일원
	동 천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83번길 40	동천동, 고기동 일원
	상 현 1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71	상현동 일원
	상 현 2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48	상현동 일원
	상 현 3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23	상현동 일원
	성 복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00	성복동 일원

[별표 2] 〈개정 2025. 5. 2〉

농업기술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제2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도시농업상담소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77번길 17	기흥구·수지구 관할 동지역
중 앙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 곡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포곡읍
모 현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	모현읍
남 사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내기로 22	남사읍
이 동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	이동읍
원 삼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	원삼면
백 암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로 17-5	백암면

[별표 3] <개정 2024. 7. 15>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제19조제3항 관련)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치보인구보건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처인구 일원
기보흥구보건소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기흥구 일원
수보지건구보건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 일원
모보건현읍지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	모현읍 일원
이보건동읍지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	이동읍 일원
남보건사읍지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내기로 22	남사읍 일원
원보건삼면지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	원삼면 일원
백보건암면지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	백암면 일원
양보건지면지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 5	양지면 일원
원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421번길 8-1	원암리, 진목리, 전궁리 일원
아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남산로6번길 2	아곡리, 완장리, 창리 일원
죽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634	죽능리, 목신리 일원
대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571번길 25	대대리, 정수리, 주북리 일원
백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797번길 48	백봉리, 고안리 일원
장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599-3	장평리, 용천리, 옥산리, 석천리 일원
가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로24번길 25	가창리 일원
고보건진료소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713-1	고매1, 2, 4, 8통 농서1통
공보건진료소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90번길 64	고매3, 5, 6, 7통 공세동 일원

[별표 4] 〈개정 2021. 2. 19〉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6조 제2항 관련)

구 명	관 할 구 역	비 고
처 인 구	포곡읍, 모현읍, 이동읍, 남사읍,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기 흥 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영덕동, 언남동, 마북동, 청덕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수 지 구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별표 5] 〈개정 2019. 12. 13〉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6]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 율	1.5% 이내	7% 이내	24% 이내	33% 이내	28% 이내	6.4% 이상	0.1% 이내

2. 연구직 · 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2% 이내	88%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10% 이내	35% 이상	35% 이상	10% 이내	10% 이내

[별표 7] <개정 2025. 5.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3,392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계		3,338	-					
	2급	2	2	-	-	-	-	-
	3·4급	4	2	1	-	-	1	-
	4급	22	13	-	3	4	2	-
	4·5급	4	3	-	-	-	1	-
	5급	168	63	5	9	15	37	39
	6급 이하 계	3,138	-					
별정직 계		4	-	-	-	-	-	-
	5급상당	-	-	-	-	-	-	-
	6급상당 이하 계	4	-					
전문경력관 계		4	-					
연구직 계		7	-					
	연구관	-	-	-	-	-	-	-
	연구사	7	-					
지도직 계		38	-					
	지도관	4	-	-	4	-	-	-
	지도사	34	-					

[별표 8] 삭제 <2024. 7. 15>